

국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기관이 지키겠습니다!

2022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REDUCING WORKER'S DEAT IN ACCIDENT

CONTENTS

01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I 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인가!

- 03 우리는 이미 위험사회의 중심에 있다
- 04 국민안전, 새로운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 05 사고사망 감축,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II 산업재해 사망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 07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 08 산업재해 감축 추진전략
- 09 추진전략 01_주체별 역할 · 책임 명확화 및 실천
- 11 추진전략 02_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 13 추진전략 03_현장 관리 · 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 15 추진전략 04_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III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 18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전략
- 19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
- 20 공공기관 산재예방 정책방향
- 22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전면개정
- 24 사망사고 처벌 및 조치 강화

IV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구축 지원

- 26 01_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 27 02_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지원
- 03_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 28 04_공공기관 안전담당자교육
- 29 05_인터넷 원격 안전보건교육
- 30 참고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매년 일터에서 약 2,000명이 사망하고, 이 중 업무상 사고로 약 1,000명('18년 971명) 가량이 목숨을 잃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 손실액은 22조원 규모로, 일터에서의 사망 및 심각한 부상은 천문학적인 사회적, 재정적, 개인적 비용을 동반한다. 최근에도 다수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8년을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의 원년으로 설정하였으며, 2022년까지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망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인지, 위험의 원인과 핵심 기인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I 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인가!



객관적 위험의 증가

대형화, 복합화,
고도화, 집적화

우리는 이미 위험사회의 중심에 있다

우리는 지금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경제와 산업이 발달할수록 위험은 줄지 않고,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화학물질이 생산되고 있고, 교통수단은 점점 빨라지며, 건물은 초고층화되고 있다. 이처럼 발전하는 경제, 산업의 속도만큼 시설·설비에 의한 위험은 대형화·복합화·집적화·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의 이면에 따른 시설·설비의 노후화, 비정규직화로 인한 기술·기능인력의 부족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스템 붕괴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책 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현대사회에서의 위험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이 조심한다고 해서 전부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 위험을 숨기지 않고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여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사회(국가, 공공, 기업)가 이를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자살, 교통사고 사망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국민안전, 새로운 국정운영의 핵심이다

2018년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신년사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2022년까지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여, 국민안전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안전 컨트롤 타워가 되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나라. 국민이 평안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

국민생명 안전이
최우선 가치

사고사망 감축,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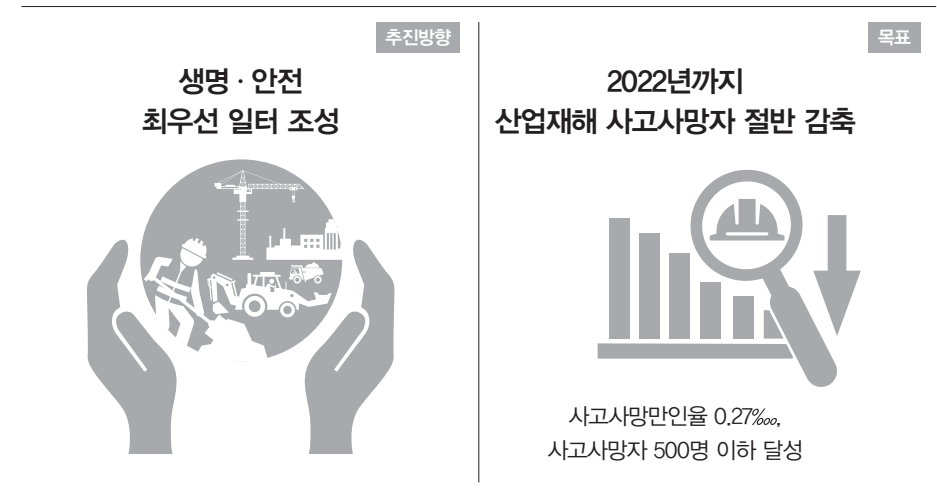
정부는 2019년 3월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잇단 대형사고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공공기관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러한 가치가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공공기관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대책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뿐 아니라 국민 생명, 안전에 영향을 주는 '시설 안전'까지 포함한 안전관리 종합대책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점검 강화 등 안전중심 경영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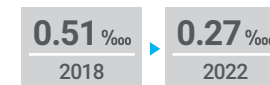
II 산업재해 사망사고,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정부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사고사망만인율 목표



올해 초 정부는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감소를 위해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연간 사고사망자수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발표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의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한 것이다.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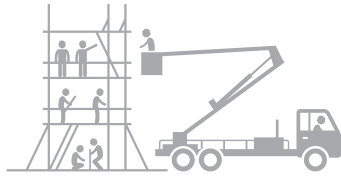
01 주체별 역할 · 책임 명확화 및 실천

- ① 발주자(건설) 책임 부여
- ② 원청 역할 확대
- ③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 ④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03 현장 관리 · 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 ①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 ②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 · 감독
- ③ 안전 관련 불공정관행 해소



02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 ① 고위험 분야에 지도 · 감독 역량 집중
- ② 건설업
- ③ 건설기계 · 장비
- ④ 조선 · 화학업
- ⑤ 금속 · 기계(소규모) 제조



04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 ① 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장 보급
- ②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 ③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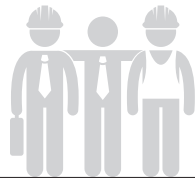
01 정부 산업재해 감축 추진전략 주체별 역할 · 책임 명확화 및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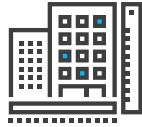
현행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유지 의무는 있으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할 · 책임이 없어 안전관리에 소홀해왔다. 원 · 하청 구조 속에서 위험은 외주화되고,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은 제한적인 실정이다. 하청은 고용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이 집중된다. 하지만 하청은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하고, 재해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동자는 위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위험회피 여건이 미흡하고,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작업수칙 미 준수도 다수 발생된다. 따라서, 주체별 위험유발 요인에 따른 책임 및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점추진과제

- 모든 주체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제도정비 등을 추진하여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정립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등 대책내용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발주자(건설) 책임 부여
-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 공공기관 발주자 책임 선도모델 정립



- 원청 역할 확대
-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확대
- 원청이 하청의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토록 유도



- 하청 등 사업주 책임 이행 강화
-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
- 하청업체 안전관리 활동 활성화
- 사업장 안전관리 책임성 강화



- 노동자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를 통한 사고방지
-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지도
- 노동자 위험상황 신고 활성화
- 긴급대피 및 작업중지 요청제도 실효성 보완

02 정부 산업재해 감축 추진전략 고위험 분야 집중관리



'18년 기준 건설업(49.9%, 485명) · 제조업(22.3%, 217명)에서 사고사망자의 4분의 3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업은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으며*, 사망자의 약 20%가 기계 · 장비 사용에 의해 일어났다. 제조업은 떨어짐 · 끼임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①화학제품 제조업 ②조선업 ③금속제품 및 기계기구제조업 등에서 다발했다. 이에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기계 · 장비, 조선 · 화학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사고원인별 대책 마련 및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한다.

* 건설업 사망사고('18) : 떨어짐(290명, 57.9%), 부딪힘(46명, 10.1%), 깔림 · 뒤집힘(34명, 6.6%)

중점추진과제

-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 추진



- 고위험 분야에 지도·감독역량 집중
- 위험요인별 지도·감독 집중 실시
- 산업별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체계적 관리
- 자치단체의 적극적 산업재해 감소 노력 유도
- 관계부처 합동 「안전보건 리더회의」 운영



• 건설 분야

- 착공 전부터 위험요소 사전 점검
-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 자율개선 노력 유도 및 사고발생시 불이익 강화



• 건설기계·장비 분야

- 임대 및 사용 과정에서의 주체별 책임 명확화
- 제조 및 검사 단계에서의 관리 강화
- 현장 안전사용 지도



• 조선·화학업 분야

- 조선업 안전관리 여건 조성
- 화학사고 고위험군 관리 강화



• 금속·기계(소규모) 제조 분야

-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통한 재해예방
- 민간기관 기술지원, 안전관리 역량 제고

* '18년 4개 분야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621명으로 전체(971명)의 64%

03 정부 산업재해 감축 추진전략 현장 관리·감독 시스템의 체계화



제한된 감독인력 하에서 물량 중심의 사업장 감독으로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사고 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지도·감독시스템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중점추진과제

- 산업안전 감독의 사전예방 기능 강화 및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등 구조적 문제 중점 개선
- ▶ 감독 시 법 위반 사항 적발, 기술적 요인 점검 등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보건시스템 구축 지도



-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 제고 및 체계화
 - 컨설팅형 현장지도 ·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안전보건정보연계시스템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체계적 점검
 - 근로감독관 증원과 전문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 점검 · 감독
 - 노사 참여형 지도 · 감독을 통한 수용성 제고
 - 불시점검 강화를 통한 경각심 제고
 - 법 위반에 대한 엄중 조치
 - 유사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신속홍보 및 지도 강화



- 안전 관련 불공정 관행 해소
 -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관계 구축
 - 불공정 관행 및 불법 재하도급 점검 ·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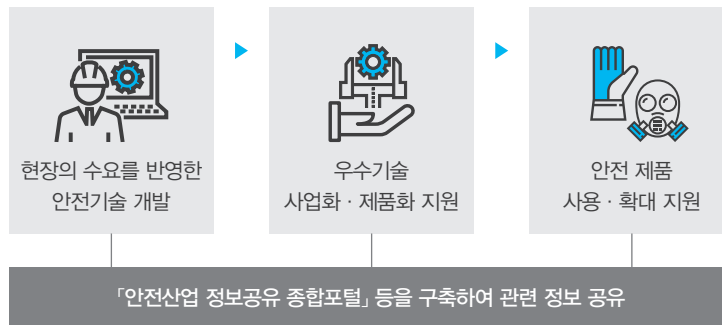
04 정부 산업재해 감축 추진전략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단기 성과중심 기업문화로 인해 현장에 대한 안전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졌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표출된다. 이로 인해 형식적 안전보건교육과 노사의 안전의식 부족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업이 변화해야 하며, 앞으로 안전기술 개발 ·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중점추진과제

- 안전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최우선 문화 확산 도모



• 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장 보급

-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기술 개발
- 우수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제품화 지원
- 안전제품 사용 확대·지원
- 안전 관련 정보 공유 촉진



•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교육

- 체험과 현장중심 교육시스템 마련
- 중소기업 경영자 안전교육 실시



•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 범국민 안전의식 제고
- 사업장 안전중시 문화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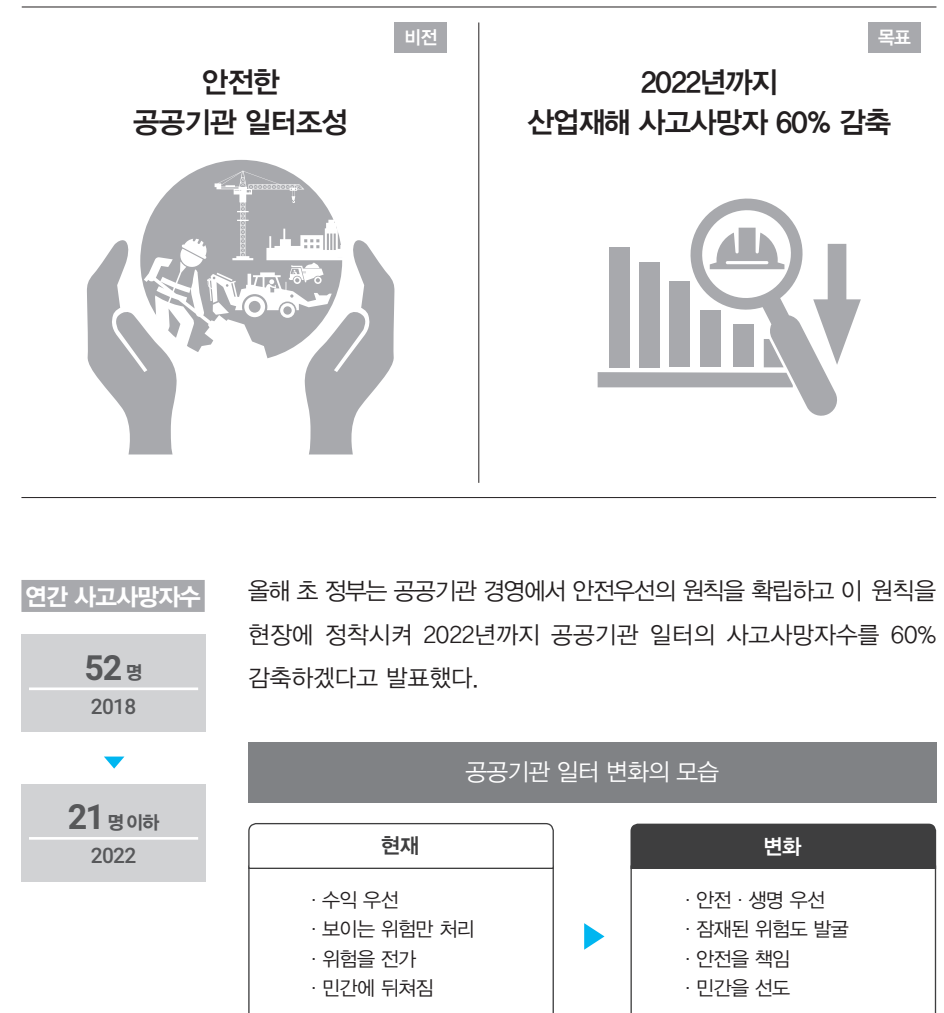
III 공공기관 안전강화 대책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추진전략

 0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①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 ② 안전투자(인력, 시설) 대폭 확대 ③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④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	 0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현장 ①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 ②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 ③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0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구조 ① 원청의 책임 강화 ②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③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0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① 안전 우선 인식 · 문화 확산 ②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③ 안전관리 실행 체계 구축

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



공공기관 산재예방 정책방향



공공기관 작업장의 사망사고 등 산재사고 반복으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근원적 정책 추진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에서 안전경영 우선 원칙을 확립, 이 원칙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산재예방 정책방향

추진경과

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수립 및 발표(국무회의, 3.19.)

국무회의 시 대통령 말씀

- 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의 개별조사 반드시 실시
- ② 안전장치 또는 작업방식 등 구조적 문제 발견 시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사명감 및 산업안전에 이끌어 간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강력하게 진행

나. (세부계획)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4.4.)

다. (개별조사 강화) 공공기관의 사망사고 조치강화 기준** 시달

- 조치강화 기준 시달 이후 3건의 사망사고 발생,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형사입건 후 수사 중

라. (구조적 문제 시정) 근원적 사고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기감독 실시

- 유해·위험요인 개선과 더불어 안전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 병행, 사고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

마. (불시점검) 공공기관 현업사업장(104개소)의 하청노동자 보호조치 준수여부 불시점검(4.10.~30.)

- ※ 주요위반 사례: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추락 위험 장소의 안전시설 미설치 및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 주요내용: 개정 산안법 조기이행 지침 및 안전근로협약체 지침 마련 등부

**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조사 강화 및 조사인력 보강(근로감독관 2명 +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하위법령 전면개정

정책방향

가. 법의 보호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개정 · 공포('19.1.15., 시행: '20.1.16.)

○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행령 등 4개 하위법령* 개정 추진

〈1〉 도급인의 안전 · 보건조치 책임장소 확대

- (개정법 제10조 제2항)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 하거나 지정 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 ·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개정법 제63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행령안 제11조 등) 현행 붕괴 · 화재 · 추락 · 질식 등 22개 위험장소**로 규정

〈2〉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규정 신설

- (개정법 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 ①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작업” 또는 “동일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②유해 ·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 ③작업중지 해제 절차 · 방법, 심의위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부령으로 위임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 토사 · 건축물 ·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기계 · 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등

정책방향

- (시행규칙안 제71조, 제72조) ① 업주는 작업중지 해제요청 전 관련작업 근로자의 의견 청취 ②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개최 ③심의위는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 이상으로 구성

〈3〉 사내도급 승인제도 강화

- (현행법 제28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도급, 수은 · 납 · 카드뮴 제련작업 등, 허가대상물질*작업, 산재예방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작업)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
- (개정법 제58조) 도급, 수은작업 등 현행 인가대상 작업은 사내도급 금지 ①일시 · 간헐적 작업 ②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도급인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도급금지를 예외적으로 허용
- (개정법 제59조) 안전 · 보건에 유해 ·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 받도록 규정
- (시행령안 제51조) 농도 1% 이상의 황산 · 불산 · 질산 · 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하는 작업 및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신설

- (개정법 제61조) 도급인에게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수급업체 선정의무를 부여(선언적 규정)
 -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발 · 배포('19.8)

* 직업성 암 등 중대 건강장해 유발 우려가 있는 물질(염화비닐 등 12종)

사망사고 처벌 및 조치 강화

정책방향

- 가.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사망재해를 유발한 사업장에 대해서 엄정한 감독 실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단계별 조치* 강화
- 나. 사망사고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진 책임 확인을 위해 사고개요, 인명피해 및 발생원인 등을 관계부처에 개별 통보
 - ※ '19.상반기에 발생한 공공기관 사망사고(발주공사 포함)의 재해조사 보고서를 기재부 및 주무부처 일괄통보(7월중)
- 다. 공공기관 도급사업 안전보건실태 불시점검
 - 사내하청 다수 사용 공공기관 및 공공 발주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원청의 하청 노동자 보호조치 준수 여부, 발주자의 책무이행 등을 불시점검(개정 산안법 조기이행 지침 준수 여부 확인 병행)
- 라. 주요 사고원인 심층 분석 및 정보제공
 - 주요 사고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 동종기관 정보제공 및 공유로 사고재발 방지(7월~)

* 작업중지 → (특별·정기)감독 → 안전보건진단·개선계획수립명령(또는 재발방지계획제출지시) 등을 패키지화(化)

IV 공공기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지원



01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

목적 공공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현장의 안전보건 활동 작동성, 협력업체 안전보건 관리 등 안전관리활동 수준평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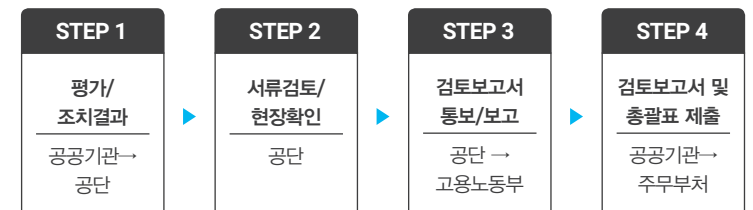
- 추진내용**
- 근거 :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9-47호)
 -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주관(수행)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 평가내용 (P-D-C-A 관점의 성과 평가)
 - ① 안전보건체계
 - ② 안전보건활동 계획
 - ③ 안전보건활동 수준
 - ④ 안전보건활동 성과
 - ⑤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 이행수준
 - 향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평가방침 확정시 사전설명회 등 개최 예정



02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지원

목적 공공기관의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추진 및 그 결과에 대한 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이행점검 수행

- 추진내용**
- 대상 : 최근3년간 사고사망 발생 공공기관(29개 기관)
 - 주요내용 : (현장 작동성 확인) 위험성평가 결과 및 수급업체 점검/ 조치내역 확인
 - 제출 및 검토 절차



0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지원

목적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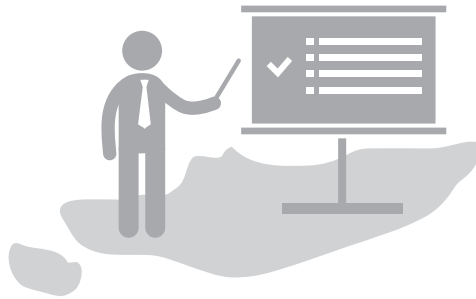
- 추진내용**
- 산재현황,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 안전관리 중점기관(32개소)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신청시 우선지원
 - ※ 해외진출 등을 위해 국제인증이 필요한 경우 ISO 45001 인증으로 대체 가능

04 공공기관 안전담당자교육

목적 공공기관 작업현장의 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한 실무능력 향상 교육 추진

추진내용

- 대상 : 공공기관(본사 및 지역사업소 포함) 안전관리자, 안전전담부서 직원 등
- 교육시간 : 총 4시간 과정
- 내용 :
 - 공공기관 안전강화대책 추진배경 및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 공공기관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 일정 및 장소 : '19년 9월중, 공단 6개 교육센터별(서울,인천,부산, 대구, 광주, 대전세종) 실시
- ※ 자세한 세부 일정은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참조



05 인터넷 원격 안전보건교육

목적 산업법 일부 적용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의무가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터넷 원격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및 산재 사망사고 줄이기 공감대 형성에 기여

추진내용

- 시기 : '19. 9월 ~
- 대상 :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 콘텐츠구성 : (공통) 전문가 특강, 악성 사망사고(추락·질식 등) 예방 콘텐츠로 구성, (안전·보건·안전문화) 모듈형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4~5차시, 차시당 30분 내외) 구성

구분	과정수	콘텐츠개요	비고
공통	1	전문가 특강, 악성 사망사고 예방 등	
산업안전	3	산업안전 지식 습득을 위한 단계별 차등화 과정	step Ⅰ,Ⅱ,Ⅲ (각 4차시)
산업보건	3	산업보건 지식 습득을 위한 단계별 차등화 과정	
안전문화	3	안전문화의 개념, 행동특성 안전문화, 휴먼에러 조직적 예방 등 단계별 차등화 과정	step Ⅰ,Ⅱ,Ⅲ (각4~5차시)

○ 교육비 : 무료

○ 학습프로세스 :

① 회원가입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www.safetyedu.net)에서 회원 가입

② 수강신청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입력) 후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과정]에서 [수강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해당 과정 신청

③ 나의 강의실

로그인 후 상단메뉴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

- 1일 학습시간 제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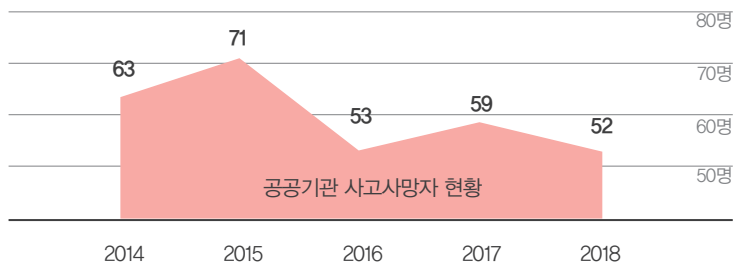
참고1 공공기관 재해현황

총괄

-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전체 산재사고(年 8만여명)의 1.8%, 사망자(年 9백여명)는 6.1% 수준
- 전체 공공기관의 산재사고 재해자는 '14년 1,602명에서 '18년 1,690명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年 50명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992	955	969	964	971
공공기관	63	71	53	59	52

*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보험 요양승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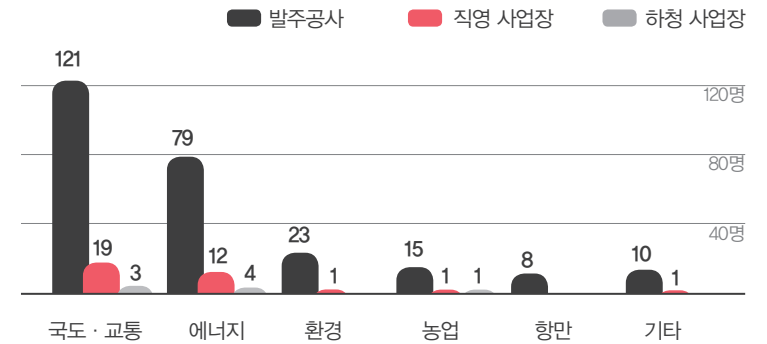


분야·유형별 사고사망 현황

- (분야) 국토·교통 48.0%(143명), 에너지 31.9%(95명), 환경 8.1%(24명) 순으로 점유

분야·유형별 사고사망 현황

- (유형) 발주공사* 85.9%(256명), 직영 사업장 11.4%(34명), 하청 사업장 2.7%(8명) 점유



업종별 사고사망 현황

- (업종별) 건설업 83.9%(250명), 운수·창고및통신업 9.7%(29명), 광업 2.7%(8명) 순으로 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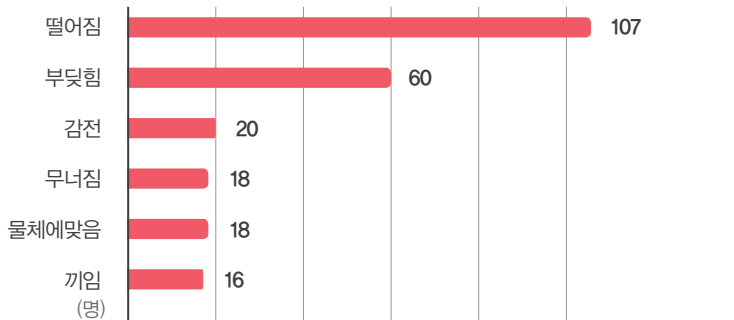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국토/교통	에너지	환경	농업	항만	기타
계	298	143	95	24	17	8	11
건설업	250	121	81	23	15	—	10
운수·창고 및 통신업	29	21	1	—	—	7	—
광업	8	—	8	—	—	—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	—	3	—	—	—	—
기타 업종	8	1	8	1	2	1	1

* 도로·교량·아파트 등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

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

- 떨어짐(추락) 35.9%(107명), 부딪힘(충돌) 20.1%(60명), 감전 6.7%(20명), 무너짐 6.0%(18명), 물체에 맞음 6.0(18명) 순으로 점유
- 국토·교통분야 떨어짐/부딪힘, 에너지분야 떨어짐/감전, 환경 및 농업분야 떨어짐, 항만분야 끼임 다발



단위 : 명

구분	계	국토/ 교통	에너지	환경	농업	항만	기타
계	298	143	95	24	17	8	11
떨어짐	107	48	37	7	4	2	9
부딪힘	60	47	6	4	1	2	-
감전	20	4	15	-	1	-	-
무너짐	18	11	3	3	1	-	-
물체에 맞음	18	7	5	3	2	1	-
끼임	16	4	7	1	-	3	1

참고2 안전관리 중점기관 [97개]

유형	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중복제외)	97개	33개	40개	24개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32개	《24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지주택공사,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대한석탄공사	《7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수산업자관리공단	《1개》 국방과학연구소
제5조 제1항 제3호	34개	《13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6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거래소,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15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한적십자사,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제5조 제1항 제4호	48개	《23개》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지주택공사, ㈜강원랜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1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콘텐츠진흥원	《13개》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립암센터, 울산과학기술원,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제주대학교병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제5조 제1항 제5호	28개	《7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 에스알	《21개》 도로교통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생태원, 독립기념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1. 전 연도부터 과거 5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기관
2. 산업재해 현황,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무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한 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관·시·군·자치단체 관리기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을 관리주체
5. 기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기관

참고3 2019년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계	산업 통상 자원부	국토 교통부	교육 부	해양 수산부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보건 복지 부	환경 부	문화 체육 관광부	금융 위원회	고용 노동부	그외
총계	339	41	25	22	16	45	25	11	32	8	11	103
(중점기관)	97	22	11	9	8	6	6	5	4	4	3	19
시장형 공기업	16	12	2	—	2	—	—	—	—	—	—	—
(중점기관)	16	12	2	—	2	—	—	—	—	—	—	—
준시장형 공기업	20	5	7	—	3	—	—	1	1	—	—	3
(중점기관)	17	4	5	—	3	—	—	1	1	—	—	3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4	2	—	1	—	—	1	—	2	4	1	3
(중점기관)	5	1	—	—	—	—	1	—	1	1	1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9	12	6	2	4	10	8	4	4	—	4	25
(중점기관)	35	5	3	—	3	2	2	3	2	—	2	1
기타공공기관	210	10	10	19	7	35	16	6	25	4	6	72
(중점기관)	24	—	1	9	—	4	3	1	—	3	—	3

MEMO

참고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KOSHA18001) 인증 공공기관 현황

구분	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총계	15	9	3	1	2
시장형 공기업	7	6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강원랜드	1 인천국제공항공사	—	—
준시장형 공기업	6	2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	2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1 한국수자원공사	1 한국마사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	1 한국산업단지공단*	—	—	1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 안전관리중점기관(97개사) 비대상

MEMO

함께 지킬 안전
모두가 누릴 권리



고용노동부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